

의안번호	2202228
의 퇴 인	김선민의원
회 답 일	2024.08.19.
추계번호	24C20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억 1,500만원씩,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7,500만원(연평균 1억 1,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19조의3)	115	115	115	115	115	575	1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u>하여야 함</u> (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제2항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함</u>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설, 증설,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제4항 신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5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19조의3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함(제1항 신설) － 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 출연금 및 용자금 등으로 함(안 제19조의2조)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제3호: 의 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3	안 제15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평가)		
4	안 제19조의3 (기금의 관리·운용)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 (안 제3조)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¹⁾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2024년 기준, 1,717억원)을 통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대전의료원 설립 지원,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지원, 지역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안 제6조)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역별 병상 총량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규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 병상 총량에 대한 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²⁾

- 2023년 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총 228개이며,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병상 수는 270개임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보건복지부의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023.8.)에 따르면, 지역별 병상 총량에 대한 시책은 시·도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2023년 10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안 제15조)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였으나, 현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있고, 평가에 따른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현행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 등도 차등지원 없이 지원받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변화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19조의3)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안 제29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산출함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19조의3)
 - 개정안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비” 사업을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금 사례를 준용하여 기금 관리 방법 및 위원회 규모 및 개최 횟수 등을 가정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을 직접 관리·운용하며 2024년 기준 “기금관리비”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배정하였고, 기금관리비는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비(회의실 대여료, 위촉위원 수당 등)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정원은 15명(당연직 7인, 위촉 9인)이며, 2022년 7월~2023년 6월 1년간 총 5회(대면 2회, 서면 3회) 개최되었음

○ 추계 결과, 추계기간 중 총 5억 7,500만원 발생

[표 1]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19조의3)	115	115	115	115	115	575	1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